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
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1월 25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86호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(근무성적평정)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(근무성적평정)

③ 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팀의 팀장을 제1차 평정자로 하고 소속부서 부장을 제2차 평정자로 하며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. 다만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.

제30조(병가)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(병가)

③ 업무상 질병, 부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함에 따른다.

별지 제3호 서식

별지 제3호 서식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20조(근무성적평정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. 다만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. ④ <생략> 제30조(병가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업무상 질병·부상 등에 의한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	제20조(근무성적평정) ① <현행과 같음> ② <현행과 같음> ③ 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팀의 팀장을 제1차 평정자로 하고 소속부서 부장을 제2차 평정자로 하며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. ----- ----- ----- ④ <현행과 같음> 제30조(병가) ① <현행과 같음> ② <현행과 같음> ③ 업무상 질병, 부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함에 따른다.	

현 행

[별지 제3호 서식]

기간제 및 전환근로자 근무성적 평정서

● 평정대상자

소 속	성 명	생년월일	담당업무	현 계약일	계약 만료일

1. 근무성적 평정(90%)

① 직무 수행 능력 (90%)	평정요소		성실성				친절도				인화력				업무숙련도			
	평정자		우수	보통	미흡	저조	우수	보통	미흡	저조	우수	보통	미흡	저조	우수	보통	미흡	저조
	(45%)		12	9	6	3	11	9	7	5	11	9	7	5	11	9	7	5
	확인자		우수	보통	미흡	저조	우수	보통	미흡	저조	우수	보통	미흡	저조	우수	보통	미흡	저조
	(45%)		12	9	6	3	11	9	7	5	11	9	7	5	11	9	7	5
① 평 정 점			점															

2.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(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)

○ 지 각()회 - 감점 2점	○ 경고 또는 주의()회 - 감점 5점
○ 무 단 결 근()일 - 감점 5점	○ 대 민 불 친 절()회 - 감점 3점
○ 무 단 조 퇴()회 - 감점 3점	
○ 장시간무단이석()회 - 감점 3점	

② 직무수행태도(10%)	기준점 : 10점	감 점 : 점	평정점 : 점
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3. 종합 평정점

종합 평정점 (평정점 합계 ①+②)	점
---------------------	---

4. 종합평정 의견

평정자				
의 견	소속 :	직위 :	성명 :	(서명)
확인자				
의 견	소속 :	직위 :	성명 :	(서명)

개 정 안

[별지 제3호 서식]

기간제 및 전환근로자 근무성적 평정서

● 평정대상자

소 속	성 명	생년월일	담당업무	현 계약일	계약 만료일

1. 근무성적 평정(90%)

※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앞쪽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

-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·우수·보통·미흡·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.(해당란에 ○표)
-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임용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 평정함

① 근 무 성 적 (90%)	평정요소		실 적 의 질					실 적 의 양					적 시 성					업 무 개 선 도				
	평정점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	1차평정자 (30%)	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
	2차평정자 (30%)	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
	확인자 (30%)	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
	평 정 점																					

2.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(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)

○ 지 각()회 - 감점 2점	○ 경고 또는 주의()회 - 감점 5점
○ 무 단 결 근()일 - 감점 5점	○ 대 민 불 친 절()회 - 감점 3점
○ 무 단 조 퇴()회 - 감점 3점	
○ 장시간무단이석()회 - 감점 3점	

② 직무수행태도(10%)	기준점 : 10점	감 점 : 점	평정점 : 점
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3. 종합 평정점

종합 평정점 (평정점 합계 ①+②)	점
---------------------	---

4. 종합평정 의견

1차 평정자 의 견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2차 평정자 의 견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확인자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·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다만,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업무상 사고

- 가.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나.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. 삭제
- 라.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
- 마.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
- 바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2. 업무상 질병

- 가.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- 나. 업무상 분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- 다.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- 라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
3. 출퇴근 재해

- 가.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- 나.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
② 근로자의 고의·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·질병·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부상·질병·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

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이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.

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